#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45

발의연월일: 2021. 11. 10.

발 의 자: 박완수·강기윤·김영진

김진표 • 박광온 • 백혜련

유한홍 · 이달곤 · 이용우

최형두 · 한준호 · 홍정민

의원(12인)

## 제안이유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22년 1월 13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됨.

2022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특례의 나열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추가 특례가 없음.

이름뿐인 특례시가 아닌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권한이양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또한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자

치권 부여가 필수적임.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특례를 추가로 규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인 특례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계 법률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확대된 사무특례 삭제(안 제 41조 제4호 및 제5호 삭제)
- 나. 특례시의 안정적 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최소한의 특례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설치,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선박의 입출 항·항만운송사업 및 해양오염방지 등 항만의 관리·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방치선박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 지명 및 항만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산지전용허가 심사, 지역산업진홍계획수립 및 지역특화산업·광역협력권산업 선정,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운영 및 토지수용위

원회 구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단지개발 및 공업지역 공급물량 배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및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물류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물류정책위원회 등 물류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을 우선 규정함(안 제41조 제8호부터 제23호신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1조제6호부터 제 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 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 관 설치
- 9.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제2항·제6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6조제3항·제4항·제5항, 제58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 10.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 3조, 제14조, 제15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7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3조, 제96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9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

- 2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9조 및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7항제2호,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26조의3, 제26조의5, 제27조의2, 제27조의6, 제28조, 제29조의3, 제34조 및 「해양환경관리법」제33조제1항제2호, 제115조제2항, 제133조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선박의 입출항·항만운송사업 및 해양오염방지등 항만의 관리·운영
- 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56조, 제57조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방치 선박 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등 공유수면 관리
- 12. 「항만법」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 지명. 「항만 공사법」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항만위원회 비상임위원 추 천
- 13. 「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단,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써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

- 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 한함)
-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에 따른 시 ·도 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 협력권산업 선정
- 1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5항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개 선부담금의 부과·징수
- 16.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5항, 제49조, 제50조, 제61조제1항 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 17.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8항 및 제31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 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 조,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제3항,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도지수용위원회 설치·운영 및 토지수용위원회 구성
- 19.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 산업단지개발 및 공업지역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항
  - 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제1 항·제3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제8조제2항, 제21조, 제2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도권 공

업지역 공급물량 배정

- 2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7조의2, 제7조의6, 제7조의7, 제7조의8, 제7조의9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관리 및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 제11조의7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22조의6, 제22조의7,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44조, 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 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
- 23. 「물류정책기본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등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특별법」 제4조 및 제12조에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삭 제>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 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 계 획의 승인	<u>&lt;삭 제&gt;</u>
<u>6.</u> ~ <u>9.</u> (생 략)	4. ~ <u>7.</u> (현행 제6호부터 제9호 까지와 같음)
<u>&lt;신 설&gt;</u>	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교 육훈련기관 설치
<u>&lt;신 설&gt;</u>	9.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 제2항·제6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6조제3항·제4항

·제5항, 제58조, 제58조의2제 1항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10. 「항만법」 제2조제6호나 목,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 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 제4항 · 제5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 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41조, 제42 조, 제43조, 제79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 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3조, 제96조, 제98조, 제99 조, 제100조, 제101조, 제109 조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 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 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 12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 3,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 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1 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2

<신 설>

조, 제59조 및 「항만운송사 업법」 제2조제7항제2호, 제4 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2 6조, 제26조의3, 제26조의5, 제27조의2, 제27조의6, 제28 조, 제29조의3, 제34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제 1항제2호, 제115조제2항, 제13 3조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선박의 입출 항 · 항만운송사업 및 해양오 염방지 등 항만의 관리・운영 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 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 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56조, 제57조에 따른 지방 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 의 방치 선박 제거 및 공유수 면 점용・사용 허가 등 공유 수면의 관리 12. 「항만법」제4조에 따른 중 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 지명. 「항만공사법」제10조 및 제1 1조제2항에 따른 항만위원회

<신 설>

<신 설>

<신 설>

<u><신</u> 설>

#### 비상임위원 추천

- 13. 「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단,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 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 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 터 미만)인 경우로써 산림청 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 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 우에 한함)
-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 4조, 제5조, 제7조, 제11조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 및 지 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역특 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선 정
- 1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5항 및 제22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 징수 16.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5항, 제49조, 제50조, 제61 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 담금의 부과 · 징수
- 17.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신 설>

<신 설>

제8항 및 제3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징수

-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토지수용위원회 구성
- 19.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 산업단지개발 및 공업지역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항

  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

  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법」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제8조제2항, 제21조,제22조 및 「산업입지 및

<신 설>

<신 설>

<u>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u> <u>의2에 따른 수도권 공업지</u> 역 공급물량 배정

- 2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3조,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7조의2, 제7조의6, 제7조의7, 제7조의8, 제7조의9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관리 및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 제11조의7에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제22조의6, 제22조의7,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44조,제46조, 제50조의3,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4조,제57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23. 「물류정책기본법」 제9조,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

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

<u>수립 등 물류정책의 종합·조</u> <u>정</u>